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볼링코치 양성 시행세칙

1996.10.10.제정
1997. 9. 3.개정
1999. 3.22.개정
2001. 7.24.개정
2013. 8.18.개정
2016. 1.20.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세칙은 우수한 볼링코치의 양성과 경기기술을 향상시켜 우수선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장 질서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설치근거)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제3조 및 교육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함.

제3조 (적용범위)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이하 “본 협회”)와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 공인, 승인한 대회 시 볼링경기를 코치할 자.

제2장 볼링 코치 양성 교육 및 자격검정

제4조 (볼링 코치의 종류)

- 제1급 볼링 코치
- 제2급 볼링 코치

제5조 (볼링 코치 양성교육 및 자격검정 참가자격)

① 제1급 볼링 코치 양성교육 및 자격검정 참가자격

1. 국가대표선수 3년 이상의 경력자
2. 체육학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로 본 협회 선수등록(회원)후 선수활동 5년 이상의 자
3. 2급 볼링 코치 자격(본 협회) 취득 후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연수교육에 1회 이상 참가하고 지도경력 3년 이상의 자
4. 실업팀 코치경력 3년 이상의 자

② 제2급 볼링 코치 양성교육 및 자격검정 참가자격

1. 국가대표선수(후보, 상비군경력 포함) 경력자
2. 청소년대표선수(후보, 상비군경력 포함) 경력자

3. 17개 시도협회의 시도대표선수 3년 이상의 경력자
4. 체육학전공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협회 선수 등록(회원) 후 5년 이상 선수 활동한 자
5. 체육학전공 2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본 협회 선수 등록(회원)후 7년 이상 선수 활동한 자
6. 현 학교볼링팀 지도교수, 지도교사
7. 당 해 년도 등록선수가 있는 학교의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현재 볼링코치로 2년 이상 재직중인 자(단, 관련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8.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볼링부 코치(전임코치)로 임명 받고 현재 볼링코치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단, 관련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③ 학생선수 및 프로볼링 조직원은 제외한다. (단 학생선수의 경우 4,5항의 졸업예정자는 예외로 하며 추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6조 (코치 양성 교육 및 자격검정 참가) 제5조 1, 2항의 해당자는 볼링코치 자격 획득을 위한 코치 양성 교육 및 자격검정 절차 참가를 본 협회에 신청한다.

① 1차: 필기검정
② 2차: 실기 및 구술검정(1차 합격자 대상)
③ 3차: 코치 양성 자격교육(2차 합격자 대상)
④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제7조 (양성 교육 및 자격검정 시행 및 요건) 볼링 코치 양성 교육 및 자격검정은 1차 필기검정과 2차 실기 및 구술검정, 3차 코치 양성 자격교육의 순으로 시행된다. 1차 필기검정의 합격은 70점 이상, 2차 실기 및 구술검정의 합격은 심사위원 평가 평균 70점 이상을 득해야 하며 자격검정 요건에 따른 관련 과제물을 제출해야 한다.

① 1급 볼링 코치 자격시험
1. 필기검정
2. 구술검정
3. 코치 양성 자격교육
4. 논문

② 2급 볼링 코치 자격시험
1. 필기검정
2. 실기 및 구술검정

3. 코치 양성 자격교육
4. 볼링지도교안

제8조 (코치 양성 교육 및 자격검정료) 볼링 코치 양성 교육 및 자격검정 참가자는 본 협회가 정한 소정의 코치 양성 교육 및 자격검정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자격증 및 신분증) 제7조에 의거 합격한 1급 및 2급 볼링 코치에게는 소정의 자격증과 경기장에서 패용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행한다.

제3장 볼링 코치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공식 경기 코치) 본 협회 볼링 코치 자격증 소지자는 공식 볼링경기 중 지정된 장소(경기장)에서 코치자격 신분증 패용 후 지도(코치)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는 지정된 장소 출입 및 경기자를 지도(코치)할 수 없다.

제11조 (등록비와 연회비) 본 협회 볼링 코치 지도자는 별표 제2호에 의한 등록비와 연회비(매년 납부)를 납부한다.

제12조 (연수교육) ① 볼링 코치의 선진기술 습득과 과학적 지도방법 등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코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외국 유명지도자나 국내 유명인사를 초빙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② 코치 연수교육 참가자는 본 협회가 정한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자격유예 및 자격정지) 현역선수가 코치 자격 획득 시는 그 자격을 유예하고 현역 은퇴 후 자격증을 발급한다. 또한 연회비 미납 시 자격은 정지되며, 자격회복을 원할 경우 미납된 연회비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제14조 (자격박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볼링 코치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① 볼링인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코치
② 볼링 코치 연수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자
③ 대한체육회, 본 협회, 회원단체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④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⑤ 본 협회 회원단체와 회원산하단체 외의 볼링관련 타 단체의 임원에 선

임(임명)된 후 승낙한 자

제15조 (임시코치증 발급) 다음의 경우에는 임시코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대상-현재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코치자격증 미소지자로

1. 현 아마추어 선수 지도자

2. 전 프로볼링조직원(이하 “아마추어 복귀신청자”로 칭한다)은 본 협회 선수 지도자・선수 등록규정 제23조(아마추어 자격 복귀)에 따른다.

② 임시코치증 발급조건

1. 제5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당 해 년도 볼링 코치 양성교육 및 자격검정을 신청하여 응시과정이 진행 중인 자

2. 제7조 자격검정에 불합격 시, 그 이후에는 당 해 년도에 한하여 임시코치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③ 아마추어 복귀신청자가 제7조의 자격시험에 합격할 시에도 본 협회 선수선발 및 등록규정 제18조(아마추어 자격복귀)에 의하여 아마추어 자격복귀 시까지 임시코치증을 발급한다.

제16조 (경과조치) ① 본 시행세칙 전 본 협회 1급 볼링 코치 자격증 취득자는 그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등록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016.01.20) 본 시행세칙 개정 전 본 협회 3급 볼링 코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7조 2항의 2급 볼링 코치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제 17 조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1997년 9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23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2001년 7월 2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2013년 8월 1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